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649200 수영장 보호자 동반 아동 입장 불허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6세, 여)
피진정인 □□군수

주 문

□□군수에게,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이 사건 수영장 출입·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아동(6세, 여)이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부친이며, 피진정인은 □□군 문화복지회관(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책임 주체인 □□군수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행위임을 주장한다.

2024. 8. 10. 진정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가족들과 함께 피진정기관 실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당시 피진정기관 담당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묻기에 6세라고 하자 담당자는 6세 이하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동성보호자가 동반함에도 입장이 안 되는지 묻자, 담당자는 6세 이하는 「□□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입장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4] '만 6세 이하 아동은 반드시 동성 보호자와 입장해야 한다'의 내용을 제시하였더니, 담당자는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만 6세 이하는 안 된다'라고 하며 '아동은 관리하기 어렵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수영장은 일반유원지에서의 물놀이 시설과 차별되는 시설로 유아가 부모와 함께 물놀이용품 등을 착용하고 즐기는 시설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 및 군민체육시설의 목적이 강한 시설이다.

비록 시행규칙[별표4]에서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동성 보호자(성인)와 함께 입장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조례 제6조 6항(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입장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인데, 만약 연령 제한이 없을 경우 동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찰나의 순간에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령 제한은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다.

해당 진정 내용과 비슷한 문의는 몇 차례 있었으나, 대부분은 수용하는 편이었다. 이처럼 이용인의 안전과 군민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내용과 같은 주장은 다소 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피진정인은 2025. 4. 1.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6세는 동성보호자가 이용료를 지불하였을 때 무료로 동반 입장할 수 있다. 다만, 5세 이하의 입장할 수 없다’의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4] 제1호 제4목은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동성 보호자(성인)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의 내용에서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더라도 입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개정하고자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답변서, 관련 조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6세 아동이며 2024. x. xx. 이 사건 수영장에 방문하였다가 나이를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였다.

나. 이 사건 수영장은 조례에 따라 설립된 피진정기관 내에 있는 시설로, 메인풀장은 25m 길이, 1.4m 수심의 6레인이 있으며, 0.7m 수심의 유아풀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다. 현행 「□□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3] 제2호에서는 '6세는 동성보호자가 이용료를 지불하였을 때 무료로 동반 입장할 수 있다. 다만, 5세 이하는 입장할 수 없다', 같은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의 제4목에서는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동성 보호자(성인)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로 규정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25. 4. 1.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는 삭제, 같은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제4목은 '7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동성 보호자(성인)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6세 이하 입장불가)'로 개정할 예정으로 만 6세 이하는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입장을 불허할 예정이다.

5. 판단8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하여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항은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3년 제62차 회기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일반논평 제17호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제16항은 모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아동 자신의 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종교적,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지

위와 관계없이 제31조에 따른 권리를 차별없이 실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같은 일반논평 제37항에서는 놀이, 오락활동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아동의 공공 공간의 사용은 아동이 제외되는 공공 장소의 상업화의 증가에 의해 방해받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공공 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통행 금지의 도입, 문이 있는 공동체 또는 공원, 감소된 소음 수준 허용, 허용되는 놀이 행동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놀이터, 쇼핑몰 접근에 대한 제한 등은 아동을 "문제" 또는 비행 아동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우려한다. 같은 일반논평 제38항은 아동의 배제는 그들이 시민으로 발전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연령대의 포괄적인 공공 공간에 대한 경험의 공유는 시민사회를 증진하고 강화하며 아동 자신이 스스로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모든 아동의 놀이 및 오락 활동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공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장려하기 위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화를 증진 장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인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 해당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진정 제기 당시 6세(2019년생)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는 '나이'에 따라 용역 및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다. 피진정인이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이 사건 수영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해당 아동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에게는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관내 문화복지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자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정 집단의 배제에 대해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수영장에 만 6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찰나의 순간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보호자의 동반 여부 등 아동개개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이용을 금지한 것은 합리적·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차등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상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곳에 한정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이라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등의 법률에 따라 아동보호라는 측면에서 유해업소 등의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영장이라는 공간이 자칫하면 순간의

방심으로 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영장은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주민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 대하여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한 뒤에 출입의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전적·대안적 조치에 대한 고려 없이 이용 연령 제한이라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진정과 같이 일률적으로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을 성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해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관행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면 아동이 여가, 놀이 등의 생활을 영위할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개선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위원회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내었으나 해당 내용은 오히려 기존의 제한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으로 개선계획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인정사실 나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0.7m 수심의 유아풀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는 이 사건 수영장에 만 6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이 사건

수영장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인 이용자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7. 2.

위원장 이 숙 진

위원 한 석 훈

위원 원 민 경

위원 소 라 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

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수영장 이용료(제1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어른	군인·청소년	경로대상·어린이
회 원	강습반 (주4회)	기본 1개월	60,000	50,000	40,000
		연속 2개월	90,000	75,000	60,000
		연속 3개월	120,000	100,000	90,000
	자유수영	기본 1개월	50,000	40,000	30,000
		연속 2개월	75,000	60,000	45,000
		연속 3개월	100,000	80,000	60,000
1일 입장	1일 1회		3,000	2,000	1,500
단체입장	20명이상		2,500	1,500	1,000

1. 수영장 이용료 감면을 받고 입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입장할 수 있다.
2. 6세는 동성보호자가 이용료를 지불하였을 때 무료로 동반 입장할 수 있다. 다만, 5세 이하는 입장할 수 없다.

[별표 4]

수영장 이용수칙

(제23조 관련)

1. 입장 이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무자(매표자 등)가 입장을 거절합니다.

(4)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동성 보호자(성인)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